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

PENTAPORT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주택과 - 16147호(2007.10.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치 :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일반상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1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41층/45층 2개동 총 479세대(일반공급 466세대/3자녀 무주택자 우선공급 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번호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지분 (호당) (㎡)	공급세대수
	천안시	아산시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주택	21449-01	21450-01	2007000844(01)	143,635	107,729	35,906	143,635	66,966	210,601	20,263	65
	21449-02	21450-02	2007000844(02)	152,526(A)	113,723	38,803	152,526	70,689	223,215	21,391	120
				152,526(B)	113,723	38,803	152,526	70,689	223,215	21,391	10
	21449-03	21450-03	2007000844(03)	185,800	140,011	45,789	185,800	87,029	272,829	26,335	65
	21449-04	21450-04	2007000844(04)	194,276	146,307	47,969	194,276	90,944	285,220	27,519	65
	21449-05	21450-05	2007000844(05)	215,281	162,649	52,632	215,281	101,102	316,383	30,593	20
	21449-06	21450-06	2007000844(06)	220,568	166,654	53,914	220,568	103,591	324,159	31,347	120
	21449-07	21450-07	2007000844(07)	249,217	186,996	62,221	249,217	116,236	365,453	35,173	10
	21449-08	21450-08	2007000844(08)	318,643	235,611	83,032	318,643	146,455	465,098	44,317	4

■ 공급금액

(단위 : m²/원/부가세포함)

주택형 (㎡)	동/라인/층		세대수	세대별 분양가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시)
	동/라인	층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3차	4차	
								(08.05.07)	(09.02.10)	(09.11.10)	(10.08.10)	
143,635	101동:5호라인 102동:5호라인	7~11층	10	120,680,000	305,420,000	426,100,000	21,305,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234,355,000
		12~16층	10	123,550,000	312,700,000	436,250,000	21,812,500	43,625,000	43,625,000	43,625,000	43,625,000	239,937,500
		17~21층	10	126,420,000	319,970,000	446,390,000	22,319,500	44,639,000	44,639,000	44,639,000	44,639,000	245,514,500
		22~26층	10	129,300,000	327,240,000	456,540,000	22,827,000	45,654,000	45,654,000	45,654,000	45,654,000	251,097,000
		27~31층	10	130,730,000	330,880,000	461,610,000	23,080,5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253,885,500
		32~40층(101동) 32~37층(102동)	15	137,910,000	349,060,000	486,970,000	24,348,500	48,697,000	48,697,000	48,697,000	48,697,000	267,833,500
		7~11층	10	128,150,000	324,330,000	452,480,000	22,624,000	45,248,000	45,248,000	45,248,000	45,248,000	248,864,000
12~16층	10	131,200,000	332,050,000	463,250,000	23,162,500	46,325,000	46,325,000	46,325,000	46,325,000	254,787,500		
17~21층	10	134,250,000	339,770,000	474,020,000	23,701,000	47,402,000	47,402,000	47,402,000	47,402,000	260,711,000		
22~26층	10	137,300,000	347,500,000	484,800,000	24,240,000	48,480,000	48,480,000	48,480,000	48,480,000	266,640,000		
27~31층	10	138,820,000	351,360,000	490,180,000	24,509,000	49,018,000	49,018,000	49,018,000	49,018,000	269,599,000		
32~37층(101동) 32~35층(102동)	10	146,450,000	370,670,000	517,120,000	25,856,000	51,712,000	51,712,000	51,712,000	51,712,000	284,416,000		
152,526(A)	101동:7호라인 102동:3호라인	7~11층	10	135,460,000	342,850,000	478,310,000	23,915,500	47,831,000	47,831,000	47,831,000	47,831,000	263,070,500
		12~16층	10	138,690,000	351,000,000	489,690,000	24,484,500	48,969,000	48,969,000	48,969,000	48,969,000	269,329,500
		17~21층	10	141,910,000	359,170,000	501,080,000	25,054,000	50,108,000	50,108,000	50,108,000	50,108,000	275,594,000
		22~26층	10	145,140,000	367,330,000	512,470,000	25,623,500	51,247,000	51,247,000	51,247,000	51,247,000	281,858,500
		27~31층	10	146,750,000	371,410,000	518,160,000	25,908,000	51,816,000	51,816,000	51,816,000	51,816,000	284,988,000
		32~37층(101동) 32~35층(102동)	10	154,810,000	391,830,000	546,640,000	27,332,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300,652,000
		7~11층	10	135,460,000	342,850,000	478,310,000	23,915,500	47,831,000	47,831,000	47,831,000	47,831,000	263,070,500
12~16층	10	138,690,000	351,000,000	489,690,000	24,484,500	48,969,000	48,969,000	48,969,000	48,969,000	269,329,500		
17~21층	10	141,910,000	359,170,000	501,080,000	25,054,000	50,108,000	50,108,000	50,108,000	50,108,000	275,594,000		
22~26층	10	145,140,000	367,330,000	512,470,000	25,623,500	51,247,000	51,247,000	51,247,000	51,247,000	281,858,500		
27~31층	10	146,750,000	371,410,000	518,160,000	25,908,000	51,816,000	51,816,000	51,816,000	51,816,000	284,988,000		
32~37층(101동) 32~35층(102동)	10	154,810,000	391,830,000	546,640,000	27,332,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300,652,000		
152,526(B)	101동:7호라인 102동:3호라인	38~40층(101동) 36~37층(102동)	5	146,450,000	370,670,000	517,120,000	25,856,000	51,712,000	51,712,000	51,712,000	51,712,000	284,416,000
	101동:3호라인 102동:7호라인	38~40층(101동) 36~37층(102동)	5	154,810,000	391,830,000	546,640,000	27,332,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54,664,000	300,652,000
185,800	101동:6호라인 102동:4호라인	7~11층	10	160,610,000	406,480,000	567,090,000	28,354,500	56,709,000	56,709,000	56,709,000	56,709,000	311,899,500
		12~16층	10	164,430,000	416,160,000	580,590,000	29,029,500	58,059,000	58,059,000	58,059,000	58,059,000	319,324,500
		17~21층	10	168,260,000	425,840,000	594,100,000	29,705,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326,755,000
		22~26층	10	169,920,000	430,070,000	599,990,000	29,999,5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329,994,500
		27~31층	10	173,990,000	440,360,000	614,350,000	30,717,500	61,435,000	61,435,000	61,435,000	61,435,000	337,892,500
		32~40층(101동) 32~37층(102동)	15	183,550,000	464,550,000	648,100,000	32,405,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356,445,000
		7~11층	10	177,340,000	448,840,000	626,180,000	31,309,000	62,618,000	62,618,000	62,618,000	62,618,000	344,399,000
12~16층	10	181,560,000	459,530,000	641,090,000	32,054,500	64,109,000	64,109,000	64,109,000	64,109,000	352,599,500		
17~21층	10	185,790,000	470,210,000	656,000,000	32,8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360,800,000		
22~26층	10	190,010,000	480,900,000	670,910,000	33,545,500	67,091,000	67,091,000	67,091,000	67,091,000	369,000,500		
27~31층	10	192,120,000	486,240,000	678,360,000	33,918,000	67,836,000	67,836,000	67,836,000	67,836,000	373,098,000		
32~40층(101동) 32~37층(102동)	15	202,680,000	512,960,000	715,640,000	35,782,000	71,564,000	71,564,000	71,564,000	71,564,000	393,802,000		
215,281	101동:1,2호라인	38~40층	6	238,480,000	603,590,000	842,070,000	42,103,500	84,207,000	84,207,000	84,207,000	84,207,000	463,138,500
		41~43층	6	246,250,000	623,250,000	869,500,000	43,475,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474,225,000
	102동:1,2호라인	36~37층	4	233,620,000	591,270,000	824,890,000	41,244,500	82,489,000	82,489,000	82,489,000	82,489,000	453,689,500
		38~39층	4	241,370,000	610,880,000	852,250,000	42,612,500	85,225,000	85,225,000	85,225,000	85,225,000	468,737,500
220,568	101동:1,2호라인 102동:1,2호라인	7~11층	20	209,430,000	530,070,000	739,500,000	36,975,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406,725,000
		12~16층	20	214,420,000	542,690,000	757,110,000	37,855,500	75,711,000	75,711,000	75,711,000	75,711,000	416,410,500
		17~21층	20	219,410,000	555,310,000	774,720,000	38,736,000	77,472,000	77,472,000	77,472,000	77,472,000	426,096,000
		22~26층	20	224,400,000	567,930,000	792,330,000	39,616,500	79,233,000	79,233,000	79,233,000	79,233,000	435,781,500
		27~31층	20	226,890,000	574,240,000	801,130,000	40,056,500	80,113,000	80,113,000	80,113,000	80,113,000	440,621,500
		32~37층(101동) 32~35층(102동)	20	239,350,000	605,800,000	845,150,000	42,257,500	84,515,000	84,515,000	84,515,000	84,515,000	464,832,500
249,217	101동:3,4호라인	41층	2	307,150,000	777,380,000	1,084,530,000	108,453,000	108,453,000	108,453,000	108,453,000	108,453,000	542,265,000
		42~43층	4	301,010,000	761,830,000	1,062,840,000	106,284,000	106,284,000	106,284,000	106,284,000	106,284,000	531,420,000
	102동:3,4호라인	38층	2	301,930,000	764,160,000	1,066,090,000	106,609,000	106,609,000	106,609,000	106,609,000	106,609,000	533,045,000
39층		2	296,400,000	750,170,000	1,046,570,000	104,657,000	104,657,000	104,657,000	104,657,000	104,657,000	523,285,000	
318,643	101동:1,2호라인 102동:1,2호라인	44~45층	2	421,920,000	1,067,860,000	1,489,780,000	297,956,000	148,978,000	148,978,000	148,978,000	148,978,000	595,912,000
		40~41층	2	418,340,000	1,058,800,000	1,477,140,000	295,428,000	147,714,000	147,714,000	147,714,000	147,714,000	590,856,000

※ 상기 공급공고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건설사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주택과 - 16147호(2007.10.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치 :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일반상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3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66층 1개동 총 314세대(일반공급 306세대/3자녀 무주택자 우선공급 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번호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지분 (호당) (㎡)	공급세대수
	천안시	아산시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주택	21451-01	21452-01	2007000845(01)	181,035	131,977	49,058	181,035	79,219	260,254	27,743	92
	21451-02	21452-02	2007000845(02)	197,521	144,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시기 바람 (공인인증서 발급)) 3순위 : 신한은행 본·지점 (부득이한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능)	
	KB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WIFI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인터넷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접속
	KB 모바일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1,3블럭 공동)

1)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					
구분	계	1블럭			
		143,635㎡	152,526㎡(A)	185,800㎡	220,568㎡
총청남도	14	2세대	4세대	2세대	4세대
구분	계	3블럭			
		181,035㎡	197,521㎡	230,432㎡	
총청남도	9	3세대	3세대	3세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18) 현재 총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공급주택의 3% 범위내(주택형별 세대수의 3% 이내)에서 특별 공급함.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도 포함된 단 입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 제출 해야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고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후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은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	-	-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분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무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분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총청남도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분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도청(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대리 신청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제3자 대리신청시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의 전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공급공고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1,3블럭 공동)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18)현재 천안시/아산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천안시/아산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천안시/아산시 주택건설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아산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통장의 변경 절차 없이 청약가능 하도록 변경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 불가함.
- 신청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한 경우에는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 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천안시/아산시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이하 : 200만원 / 102㎡이하 : 300만원 / 102㎡~135㎡ : 400만원 / 135㎡초과 : 500만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로서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으로 전환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청약자측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분		
	2순위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천안시/아산시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2년 미만인 분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자격이 불가능한 분	
	3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천안시/아산시

※ 3순위 신청자는 가점제 적용 제외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 등(초본·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 함.(단, 청약접수자의 인터넷 활용 능력 등의 사항에 따라 창구에서의 청약접수 가능)

구분	면적구분 (전용면적)	공급기준
청약가점제	85㎡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75%를 우선 공급함.(나머지 25% 추첨제 적용)
	85㎡초과	●무주택세대주에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50%를 우선 공급함.(당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으로 주택채권압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급주택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함.

●가점제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자측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자측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분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 함. 이 경우 입주자자측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나.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자측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측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측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자측 가입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측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측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① 일반기준

가.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나.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84점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 (아래의 "감점산정 기준표" 참고)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분	기 준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당첨자 발표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	2007.10.23 (화) 9:30 ~ 16:00	▪당사 주택전시관	▪2007.10.23 (화) 18시 ▪당사 주택전시관
1순위	2007.10.24 (수) 9:30 ~ 16:30 (인터넷 / 8:30 ~ 18:00)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rt2you.com	▪2007.10.31 (수) 14시 ▪당사 주택전시관 ▪당사 홈페이지 www.epentaport.com
2순위	2007.10.25 (목) 9:30 ~ 16:30 (인터넷 / 8:30 ~ 18:00)		
3순위	2007.10.26 (금) 9:30 ~ 16:30	▪신한은행 본-지점 (부득이한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능)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1,3블럭 공통)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물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현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과기간 및 요건(1,3블럭 공통)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 가능 (단, 1년 미만 인자는 변경 전 평형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분에 한 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접수 방법(1,3블럭 공통)

- 공 통 : 청약순위에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동별, 층별, 호별, 라인별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 함.(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청약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 공급하고, 5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시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 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신청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 받음,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판」]의 인자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당청 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

※ 상기 공급공고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1,3블럭 공통)

구 분		구비서류(창구 청약자에 한함)
일 반 공 급	본인신청서 (배우자포함)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신한은행 본.지점/당사 주택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예금(1, 2순위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서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서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점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단,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서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의 전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3순위 청약 신청금(1,3블럭 공통)

구 분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 택 형	100만원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천안시/아산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1,3블럭 공통)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2007.10.31(수)) 익영업일 이후 평일 : 09:30~16:30(단, 토요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신한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람. (단,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수 결정(1,3블럭 공통)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3자녀 무주택)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등·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일 반 공 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원동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제 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비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예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주택전시관에 별도 공고 함.

▣ 공동주택 발코니설계 및 구조 변경(1,3블럭 공통)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부가세포함)			
블럭	주택형	확장위치	기본금액(1)	발코니 확장시	
				확장금액(2)	실부담 금액(2)-(1)
1블럭	143,635	거실, 침실1	7,630,000	10,280,000	2,650,000
	152,526(A)	거실, 침실1, 침실2	12,190,000	16,870,000	4,680,000
	152,526(B)	거실, 침실1, 침실2	12,190,000	16,870,000	4,680,000
	185,800	거실, 안방, 서재, 침실2	17,580,000	26,290,000	8,710,000
	194,276	거실, 안방, 서재, 침실2	18,490,000	27,330,000	8,840,000
	215,281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13,820,000	23,000,000	9,180,000
	220,568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13,730,000	22,880,000	9,150,000
	249,217	거실, 서재, 침실1, 침실2	22,330,000	37,050,000	14,720,000
3블럭	318,643	거실, 안방, 가족실, 식당,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27,680,000	53,860,000	26,180,000
	181,035	거실, 침실1, 침실2	14,310,000	19,730,000	5,420,000
	197,521	거실, 안방, 서재, 침실1, 침실2	18,730,000	29,250,000	10,520,000
	230,432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16,670,000	25,870,000	9,200,000
	265,629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19,310,000	29,150,000	9,840,000
	295,463	거실, 가족실, 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26,680,000	45,580,000	18,900,000
347,232	거실, 안방, 가족실, 서재,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29,290,000	49,800,000	20,510,000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피난구 설치로 인하여 피난구가 설치된 벽체 이음의 불면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제 등의 내용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당사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 일부가 변경될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1,3블럭 공통)

- 계약기간 : 2007.11.05(월) ~ 07.11.07(수) / 3일간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당청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청시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40-007-806665	(주)펜타포트개발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납부일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포함) 납부는 위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지정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해서만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책임이 있음.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ARS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 1통,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금(천안시/아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단,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상등본(가옥대상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청,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 가격증명원 등) <p style="text-align: cente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조건(1,3블럭 공통)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청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 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차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관련한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1,3블럭 공통)

- 입주예정일 : 2011년 10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용자조건(1,3블럭 공통)

- 중도금대출은 분양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대출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으로 인하여 개인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바람. [1블럭 - 농림협동조합중앙회] / [3블럭 - 신한은행]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1,3블럭 공통)

■ 인터넷·당첨자 발표 안내(1,3블럭 공통)

구분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제외)한 타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7.10.31 ~ 11.7	●2007.10.31 ~ 11.7
KB 모바일	이용방법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 청약 → PIN입력→당첨확인 <p>●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p>	
	이용기간	●2007.10.31 ~ 11.7 (09:30 ~ 1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1,3블럭 공통)

- 도청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

■ 유의사항(1,3블럭 공통)

- 당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위반시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를 위하여 건립되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장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자로 선정된(3순위 당첨자 포함)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 포기로 간주함.
- 본 공동주택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발생되지 않음.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아산배방산도시(분지구 포함)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전기공급 및 집단에너지 공급(난방)은 별도로 공급되며, 도시가스는 별도 사업자가 공급하고 가스 공급계획에 의거 필요시 대지내 가스저장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위치 미확정)
- 분지구내 공공시설(자하차도, 자상·지하 공공보행통로, 무빙워크, 장채전 등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귀속될 예정이며,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준공후는 특별계획구역내 시설물관리자, 입주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관리·운영 함.
- 본 모집공고 외의 상업시설, 업무시설, 장채전, 공공보행통로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거부분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지구 1,3블럭 외 4,8블럭 준공은 공사진행 일정에 따라 지연, 연장될 수 있으며, 그에 부수된 시설의 이용이 입주 후 일정시점 제한될 수 있음.(무빙워크, 장채전 수변공원, 백화점 등)
- 택지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여, 준공후 관련 지자체 등에 이관되며, 사업추진 중 일부 취소, 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광역교통개선대책상의 도로는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학교부지 일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증가 학생은 천안 불당초등학교에서 수용.
- 도로변 및 KTX 선로 주변 건물은 교통소음 등이 있을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계사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기로 함.

※ 상기 공급공고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비주거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면적 정산으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변동에 대한 차후 정산금액은 없음.
-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층고와 천정고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행, 부분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상담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후 계약 바람.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한 시설(1,3블럭 각각 설치)
 - 복리시설 : 문고(독서실), 실배방, 보육시설(어린이놀이방),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탈의/샤워실, 주민회의실, 취미실, 연회장 각 블록 1개씩 설치
- 주인커뮤니티 시설의 각 실 위치, 용도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등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천안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비주거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면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내에 설치된 세대모형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가드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구현성과 사실물의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블럭 엘리베이터는 효율적인 운행상 저층부/고층부용으로 구분 설치됨.
- 공동주택의 진입층은 건축법상 층수 구분에 의해 1블럭은 자상층, 3블럭은 자상2층으로 표기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재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거래불량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1,3블럭 공통)

블럭	보증서 번호(용지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1블럭	제01212007-101-0009600호 (005064호)	138,525,352,5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감사포함)까지
3블럭	제01212007-101-0009700호 (005065호)	119,039,225,000원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령, 이종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니스옴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감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1,3블럭 합산)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별도)
건 축	(주)서린건축사사무소	6,853,584,850원

■ 사업주체 및 시공사(1,3블럭 공통)

- 사업주체 : (주)펜타포트개발 외 4사(SK건설(주), 대림산업(주), 두산중공업(주), 계룡건설산업(주)) / 충남 천안시 불당동 663번지
- 시 공 사 : SK건설(주) /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92-18번지

대림산업(주)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46-12번지

두산중공업(주) /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계룡건설산업(주) / 대전시 서구 월평동 519번지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당사 주택전시관 및 공급회사에 문의바람.

■ 주택전시관

- 위치 : 충남 천안시 불당동 66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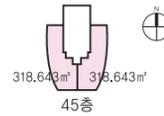
분양문의 (안내) : 1588-7082

□ 동·호수 배치표 및 세대별 총 분양가 - 1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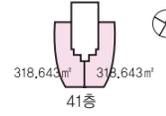
□ 동·호수 배치표 및 세대별 총 분양가 - 3BL

구 분	1BL / 101동	1BL / 102동	계
143,635㎡	34세대	31세대	65세대
152,526㎡A	62세대	58세대	120세대
152,526㎡B	6세대	4세대	10세대
185,800㎡	34세대	31세대	65세대
194,276㎡	34세대	31세대	65세대
215,281㎡	12세대	8세대	20세대
220,568㎡	62세대	58세대	120세대
249,217㎡	6세대	4세대	10세대
318,643㎡	2세대	2세대	4세대
합 계	252세대	227세대	479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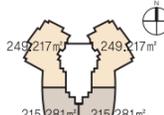
318,643㎡	318,643㎡
1호(남동향)	2호(남서향)
4501	4502
1,489,780	1,489,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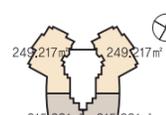
318,643㎡	318,643㎡
1호(남동향)	2호(남서향)
4101	4102
1,477,140	1,477,140



215,281㎡	215,281㎡	249,217㎡	249,217㎡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동향)
4301	4302	4303	4304
869,500	869,500	1,062,840	1,062,840
4201	4202	4203	4204
869,500	869,500	1,062,840	1,062,840
4101	4102	4103	4104
869,500	869,500	1,084,530	1,084,530



215,281㎡	215,281㎡	249,217㎡	249,217㎡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동향)
3901	3902	3903	3904
852,250	852,250	1,046,570	1,046,570
3801	3802	3803	3804
852,250	852,250	1,066,090	1,066,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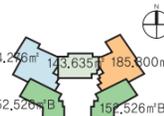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842,070	842,07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842,070	842,07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842,070	842,07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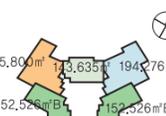
215,281㎡	215,281㎡	152,526㎡A	185,800㎡	143,635㎡	194,276㎡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824,890	824,890	517,120	648,100	486,970	715,640	546,640
3601	3602	3603	3604	3605	3606	3607
824,890	824,890	517,120	648,100	486,970	715,640	546,640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A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845,150	845,15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845,150	845,15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845,150	845,150	546,640	715,640	486,970	648,100	51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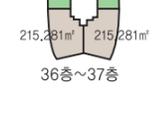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845,150	845,150	517,120	648,100	486,970	715,640	546,64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845,150	845,150	517,120	648,100	486,970	715,640	546,64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845,150	845,150	517,120	648,100	486,970	715,640	546,640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801,130	801,130	518,160	678,360	461,610	614,350	490,18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801,130	801,130	518,160	678,360	461,610	614,350	490,18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801,130	801,130	518,160	678,360	461,610	614,350	490,180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801,130	801,130	518,160	678,360	461,610	614,350	490,18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801,130	801,130	518,160	678,360	461,610	614,350	490,18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792,330	792,330	512,470	670,910	456,540	599,990	48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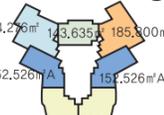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792,330	792,330	512,470	670,910	456,540	599,990	484,8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792,330	792,330	512,470	670,910	456,540	599,990	484,8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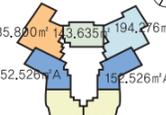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792,330	792,330	512,470	670,910	456,540	599,990	484,8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774,720	774,720	501,080	656,000	446,390	594,100	474,020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774,720	774,720	501,080	656,000	446,390	594,100	474,02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774,720	774,720	501,080	656,000	446,390	594,100	474,02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757,110	757,110	489,690	641,090	436,250	580,590	463,25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757,110	757,110	489,690	641,090	436,250	580,590	463,25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757,110	757,110	489,690	641,090	436,250	580,590	463,25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757,110	757,110	489,690	641,090	436,250	580,590	463,25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739,500	739,500	478,310	626,180	426,100	567,090	452,48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739,500	739,500	478,310	626,180	426,100	567,090	452,48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39,500	739,500	478,310	626,180	426,100	567,090	452,480



220,568㎡	220,568㎡	152,526㎡A	194,276㎡	143,635㎡	185,800㎡	152,526㎡B
1호(남동향)	2호(남서향)	3호(남서향)	4호(남서향)	5호(북향)	6호(남동향)	7호(남동향)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39,500	739,500	478,310	626,180	426,100	567,090	452,480

